

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의 견 서

- 한기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
  
-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세조례에서 시세기본조례로 이관하고, 조문순서를 정리하는 등 근거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 
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2. 25.

재무국장 이 병 한